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7.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

나. 회 부 일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3. 11.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축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건축법」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건축 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개정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치를 위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 후 제출됨.

나. 주요 조문 검토

안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5년 연장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 내 발생할 수 있는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붕괴 및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음.
- 마포구의 2023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 소·중·대형 노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운영
 - 취약시설 보강 지원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 전문인력 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의 설치 근거와 존속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여 법령의 일관성과 모 순 등이 없어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다고 판단됨.
- 다만,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위반건축물이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30%로 안정적인 반면 세출은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비보다 매년 예비비로의 편성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긴급 대응 및 복구 등의 정책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임.

^{1) 2023}년 마포구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3.29.~3.31.)

<표 1. 건축안전특별회계 년도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처원)

					(단위:전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총 계	1,754,000	1,404,000	1,250,000	500,000
7	정책사업	1,671,692	1,258,923	606,530	353,066
7	대무활동	0	0	500,000	0
1	행정운영경비	82,308	145,077	143,470	146,934
국토및지역개발		1,671,692	1,258,923	1,106,530	353,066
-	지역및도시	1,671,692	1,258,923	1,106,530	353,066
	건축안전센터	1,671,692	1,258,923	606,530	353,066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50,650	50,100	47,163	125,864
	안전취약시설 지원	3,600	58,610	43,850	13,340
	예비비	1,617,442	1,150,213	515,517	213,862
기타		82,308	145,077	500,000	0
-	기타	82,308	145,077	500,000	0
	행정운영경비	82,308	145,077	143,470	146,934
	인력운영비	78,708	137,877	143,470	146,934
	기본경비	3,600	7,200	143,470	146,934

 아울러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기 쉽고 회계 운영의 유연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다른 정책사업의 우 선순위를 무시하고 비용이 부담되는 예산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의 운용 및 효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사업의 성과를 제 공하여 부정적 견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음.

[관계법령]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5.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비
-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 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